

(주)GS글로벌 기업지배구조헌장

2021.5.7 제정

[전문]

(주)GS글로벌(이하 “회사”)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, 고객과 함께 내일을 꿈꾸며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노력한다.

회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영활동의 초석으로서 ‘(주)GS글로벌 기업지배구조헌장’을 제정하고,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이사회와 감사기구를 구성하는 등 건전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고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.

또한 회사는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통해 고객, 주주, 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, 함께 성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.

제1장 주주

제1조 주주의 권리

- ①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이익 분배 참여권, 주주총회 참석 및 의결권, 주주총회 목적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 등 상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다.
- ② 정관의 변경, 합병, 영업 양수도 및 기업의 분할, 해산, 자본의 감소 등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,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며,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의 참석이 최대한 용이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-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에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,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⑤ 주주권의 행사는 주주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,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을 최대한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.

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

-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당 1의결권을 공평하게 가지며,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.

-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, 주주에게 기업정보를 적시에,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회사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내부통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.

제3조 주주의 책임

- ① 주주는 회사의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지배주주는 회사와 다른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며, 그 지배권을 남용하여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.

제2장 이사회

제4조 이사회 기능

- ① 이사회는 회사와 주주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사항에 대해 심의, 의결하고, 경영 감독기능을 수행한다.
- ② 이사회는 리스크관리, 준법, 내부회계관리, 공시정보관리 등 내부통제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고, 지속적으로 개선·보완하여야 한다.

제5조 이사회 구성 및 이사 선임

-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한 규모이어야 하며, 다양한 논의와 효율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충분한 수의 이사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 독립성 보장을 위해 사외이사를 두어야 하며, 이사회가 실질적으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규모로 구성한다.
- ③ 이사회는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지식과 경력 등에 있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 및 책임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④ 기업 및 주주가치의 훼손에 책임이 있는 자를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.
- ⑤ 이사는 인사위원회와 이사회를 통해 이사 후보군을 검증하여 주주총회 결의로 선임하며, 사외이사의 선임은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선임한다.

제6조 이사회 운영

- ① 이사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필요에 따라 임시 이사회를 개최한다.
- ② 회사는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,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한다.
- ③ 회사는 이사회 회의 경과 과정과 중요한 심의 내용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, 개별 이사의 출석률과 안전에 대한 찬반 여부 등 활동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 사외이사

-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, 기업은 선임단계에서 이해관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 ②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,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- ③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.

제8조 이사회 내 위원회

- ① 이사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내부에 특정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감사위원회,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, 내부거래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설치한다.
- ② 이사회내 위원회는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구성한다.
- ③ 모든 위원회의 조직, 운영 및 권한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는 결의한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이사의 의무

-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되고, 항상 회사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.
- ③ 이사는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,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된다.

제10조 평가 및 보상

- ① 경영진의 경영활동 내용은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결과는 보수에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.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집행한다.
- ② 사외이사의 활동 내역은 공정하게 평가 되어야 하며, 그 평가 결과를 재선임의 결정 등에 반영할 수 있다.
- ③ 회사는 법규에 따라 주요 경영진의 보수 등을 공시한다.

제3장 감사기구

제11조 감사위원회

- ① 감사위원회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위원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한다. 단, 사외이사 결원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상법 및 정관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- ② 감사위원회는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와 경영진의 직무 집행에 대한 적법성 감사, 재무활동의 건전성과 재무보고의 정확성 검토, 중요한 회계처리 기준이나 회계추정 변경의 타당성 검토,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승인, 외부감사인의 감사 활동에 대한 평가 등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.
- ③ 감사위원회, 감사 등 내부감사기구는 정기적 회의 개최 등 감사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 외부감사인

- ① 외부감사인은 회사와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감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-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 설명하여야 한다.
- ③ 내부감사기구는 외부감사 실시 및 감사결과 보고 등 모든 단계에서 외부감사인과 주기적으로 의사소통하여야 하며,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위원회에 보고한다.

제4장 이해관계자

제13조 이해관계자의 권리

- ① 회사는 고객, 주주, 임직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한다.
- ② 회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,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며, 근로조건의 유지 및 개선에 노력한다.

제14조 이해관계자의 참여

- ① 회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이해관계자의 관련정보 접근을 지원한다.

제5장 공시

제15조 공시

- ① 회사는 사업보고서, 반기보고서, 분기보고서 등 정기공시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,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한다.
- ② 회사는 중요한 기업 정보의 공개 범위나 공개 시기에 있어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으며,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.
- ③ 회사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,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. 5. 7부터 시행한다.